

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4] <개정 2017. 12. 1.>

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(제33조관련)

1.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

- 가.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(기도기(airway)의 삽입, 기도삽관(intubation),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)
- 나. 정맥로의 확보
- 다.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
- 라. 약물투여 :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,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(설하) 투여,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,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
- 마.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

2.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

- 가.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
- 나. 기도기(airway)를 이용한 기도유지
- 다. 기본 심폐소생술
- 라. 산소투여
- 마. 부목·척추고정기·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
- 바.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
- 사. 심박·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
- 아.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
- 자.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
- 차.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(설하)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(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)